

#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504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9월 6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가. 수정이유

-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 병역명문가에게도 서울시 시설 입장료 등의 감면을 확대하는 안 제5조제1항 후단의 신설은 타 시·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중복 수혜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사항 확대안을 삭제하여 수정함(안 제5조제1항 후단 삭제).

##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.

### 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 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	수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
<p>제5조(우대) ① 시장은 <u>예우대</u> <u>상자에 대하여</u> 시에서 설치 ·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물의 <u>사용료·</u> <u>입장료·수강료</u>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    략)</p>	<p>제5조(우대) ① ----- <u>예우대상</u> <u>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</u> ----- ----- ----- <u>사용료·입</u> <u>장료·수강료·주차료</u>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 <u>이 경우</u> <u>감면 대상은 다른 시·도에</u> <u>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</u> <u>당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우대) ① ----- <u>예우대</u> <u>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</u> <u>게</u> ----- ----- ----- <u>사용료·</u> <u>입장료·수강료·주차료</u> 등 을 감면해 줄 수 있다. <u>&lt;삭</u> <u>제&gt;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”을 “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”로, “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”을 “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모”를 “부모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예우대상자에 대하여”를 “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”로, “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”를 “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“예우대상자 가족”이란 예우 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예우 및 홍보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5조(우대)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<u>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</u>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-----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부모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예우 및 홍보) ① ----- ---- 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우대) ① ----- <u>예우대상자</u> 및 <u>예우대상자 가족</u>에게 ----- ----- ----- ---- <u>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료</u>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